#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8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이수진・박선원・민병덕

김현정 • 백승아 • 송옥주

이재관 · 송재봉 · 김정호

김남근 • 민형배 • 김 윤

이인영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기 여성 근로자에 대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의학적으로 임신 후 14주를 임신 초기, 15주부터 28주까지를 임신 중기, 29주부터 42주까지를 임신 후기로 구분하며, 임신 중기를 대체로 안정기로 보는 데 대해 임신 초기와 임신 후기는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모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기간으로 보고 있음. 이에 임신기 여성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확대하여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등에 대해 근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며 결국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소진되어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여 임신기와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제도의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함(안 제60조제6항 및 제74조제7항).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을 "기간 또는 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제74조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2의3.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한 태아검 진 시간
- 2의4. 여성 근로자가 제75조에 따라 사용한 수유 시간
-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제74조제7항 본문 중 "12주"를 "14주"로, "36주"를 "28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6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u>기간</u> 은 출근한 것	<u>기간 또는 시간</u>
으로 본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의2.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제74조제7항에 따른 근로시
	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u>근로시간</u>
<u> &lt;신 설&gt;</u>	2의3.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
	한 태아검진 시간
<u>&lt;신 설&gt;</u>	<u>2</u> 의4. 여성 근로자가 제75조에
	따라 사용한 수유 시간
3. (생략)	3.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⑥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⑥

## (생 략)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 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 ⑩ (생 략)

(연행과 같음)
⑦ <u>14</u> 주
<u>28주</u>
,
⑧ ~ ⑪ (현행과 같음)